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“제1차 시험”을 각각 “시험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부동산원, 협회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로 한다. 다만,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,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 검사,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, 보상 및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, 재건축부담금 검증 등 감정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무수습에 대한 적용례)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행하는 실무수습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 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 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 의 60 5.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 터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 수를 취소한 경우: 납부한 수 수료의 100분의 50	제8조(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 <u>시험</u> ----- ----- ----- --- 5. <u>시험</u> ----- ----- ----- -----
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생 략)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 지는 협회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<u>사무소로 한다.</u>	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 지는 <u>한국부동산원, 협회 및 감 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로 한다.</u> <u>다만, 한국부동산원의 경우에는</u> <u>부동산 가격공시, 부동산투자회</u> <u>사의 재산 검사, 감정평가 타당</u>

⑤ · ⑥ (생략)	<u>성조사 및 표본조사, 보상 및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, 재건축부담금 검증 등 감정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.</u>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